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 집계 및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

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풍수해보험 통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안 제4조의2 신설)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풍수해보험 관련 통계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 1) 보험관련 통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 2)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급 등(안 제17조의3 신설)

- 1)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 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제2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보험료의 전부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로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가입 촉진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 중 전부 파손 피해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을 받아 동일한 위치에 보험목적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통계업무 등의 위탁)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 ① 법 제3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동일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최초 피해 발생시 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된 후 추가 피해 발생으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때
2.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경우로서 보험목적물이 피해를 입어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보다 보험 가입금액을 적게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목적물이 피해를 입어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을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4조제2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보험목적물) -----		----- <u>제4조제3호</u> -----
<u><신 설></u>				-----.
		제4조의2(보험료의 전부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로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 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

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풍수

해보험의 가입 촉진 대상에 포

함된 보험목적물 중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거

주하는 보험목적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풍

수해로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

중 전부 파손 피해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을 받아

동일한 위치에 보험목적물을 신

축한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 지

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6조의2(통계업무 등의 위탁)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자”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제16조의2 (생략)

<신설>

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의3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7조의3(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 ① 법 제34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동일 보험목적물이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최초 피해 발생시 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된 후 추가 피해 발생으로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때

2.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재난지

원금 지원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경우로서 보험목적물
이 피해를 입어 지급 받는 보
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가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보
다 보험가입금액을 적게하여 풍
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
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손해평
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
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
지 않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연 락 처	(044) 205 - 5355